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0
----------	-----

2021. 2. 1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김세준 의원 등 8명

나. 상정의결

-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2. 18.)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

- 한국수화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들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농인들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김세준 의원 등 5명 으로부터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본 제정안은 농인들이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 안 제2조(정의)에서 용어는 「한국수화언어법」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참고적으로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 집행부자료 재구성)은 아래와 같은 바 참고하기 바람

1)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장애유형별

(2020.12.31. 기준 / 단위:명)

전체 인구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발달		기타 (8종)
							지적	자폐성	
539,231	15,200	6,077	1,562	1,963 (13%)	131 (0.86%)	1,754	1,028	573	1,409

※ 기타 : 정신 834, 신장 827, 심장 47, 호흡기 103, 간 141, 안면 19, 장루요루 85, 뇌전증 56
 ※ 서울시 자치구 중 14위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사업)는 구청장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각 호별로 규정한 바, 각 호 별 상세 설명이 요구됨

제1호 법 제11조2)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사업

제2호 법 제12조3)에 따른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제3호 법 제16조4)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제4호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 2)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3)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연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호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원사업을 규정한 바, 각 사업별 그간 지원 현황(예산편성현황 등) 및 향후 소요 예산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농인들의 편의증진)는 「장애인복지법」 5)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농인등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현재 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의 설명과 함께, 향후 필요시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는 구청장이 농인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해당 법인 및 단체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는 구청장이 민간 운영시설에 대해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조례 제정 후에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제도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민간부문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조례 제정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또한, 법6)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7)’,

-
- 5)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6)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비추어보면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안 제7조에 보면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 답 변 : 강남구수어통역센터에 4명의 수어통역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본 제정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 지원 부분은 수어교실, 수어상담 캠프 활동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질 의 :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답 변 : 청각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고,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을 말함
- 질 의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구의 현황은
- 답 변 :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마크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례제정현황(2021년 1월 현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등 20개구 제정 시행 중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세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0
----------	-----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의자 : 김세준·이향숙·안지연·
문백한·김진홍(이상5인)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농인등이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들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농인들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농인들의 편의증진) 구청장은 농인들이 한국수어를 통하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들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